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78호 2023년 7월 7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9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... 2
- 2023년~2024년 속초시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... 3

공 고

- 속초시 분뇨수집·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고시 공고 7
-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 14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93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속초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93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였기에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8일
속 초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: 속초시 중앙동 468-1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93호선)
 - 명칭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93호선) 개설공사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시설명	시설의 세분	결정규모	금회 사업규모	비고
도로	소로1-93호선	B=10~14m, L=74m	B=3m, L=37m	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 확장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: (주)태인디앤디 대표 이규형, 이상애
 -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서관동 17층 1710호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당초)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6. 30.
변경)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2. 31.

6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사업규모	면적	비고
도로	소로1-93호선	B=3m, L=37m	111㎡	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및 새로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또한 귀속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붙임)

■ 토지조서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
계				1,221	111					
1	중앙동	468-255	도	145	6	속초시				
2	중앙동	468-17	대	870	82	케이비부동산신 탁주식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			
3	중앙동	468-193	대	165	3	케이비부동산신 탁주식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			
4	중앙동	468-243	도	41	20	속초시				

속초시 고시 제2023-102호

2023년~2024년 속초시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

2023년~2024년 속초시 지능형교통체계(ITS)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축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79조제4항(실시계획 수립·승인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(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의 명칭 : 2023년~2024년 속초시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

2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사업시행자 : 속초시
- 주소 : (24826)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(교통과)

3. 사업시행지역

- 사업구간 : 강원도 속초시 관내 주요 도로(30km) 및 교차로

4. 사업시행목적

- 속초시 도심부 주요구간의 교통정보를 수집하고, 고속도로 및 국도, 타 지자체와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도로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능형교통체계(ITS) 구축사업을 추진

- 이를 위하여, 교통신호 제어기의 온라인 및 스마트교차로를 도입하여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부 도로의 지·정체 완화를 도모하고, 스마트교차로와 민간교통정보를 활용한 교통정보생성과 VMS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우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과 교통류의 흐름을 개선

5.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

가. 사업의 규모

구분		품목	수량
센터 부문	센터장비	H/W, N/W, S/W	1식
	응용 S/W	운영단말, 연계 등	1식
	센터환경개선	상황판, 운영단말 등	1식
현장 부문	첨단신호운영	무선신호 온라인	118개소
	정보수집	스마트 교차로	7개소
	정보제공	도형식 VMS	2개소

나. 시행방법

- 관 리 청 : 국토교통부
- 시행기관 : 속초시(교통과)
- 발주방법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입찰의 참가자격)에 의한 제한경쟁입찰

5.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

가. 실시계획 평면도 : 별도 첨부

나. 개략설계도서

현장부문

- 1)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으로 교차로 방향별 교통량을 자동 수집하여 관리대상을 확대
- 2) 교통신호제어기 전개소 무선 온라인 연결로 첨단신호제어 기반 마련
- 3) VMS 교체를 통해 교통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

센터부문

- 1) 신호제어기에 설치된 온라인 신호 모듈을 이용하여 센터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운영시스템 구현
- 2) 수집된 방향별 교통량 데이터를 통해 최적 신호주기 분석을 위한 기반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고 정책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현
- 3) ITS 장비 운영을 위한 센터시스템 및 센터시설 신규구축

6. 사업시행기간

- 사업시행기간 : 2023. 8. 1. ~ 2024. 7. 31. (12개월)
- 시험운영기간 : 준공전 2개월

7.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

- 총사업비 : 3,410백만원(국비 2,046백만원, 지방비 1,364백만원)
- 국비60%, 시비40%

8. 고시기간 및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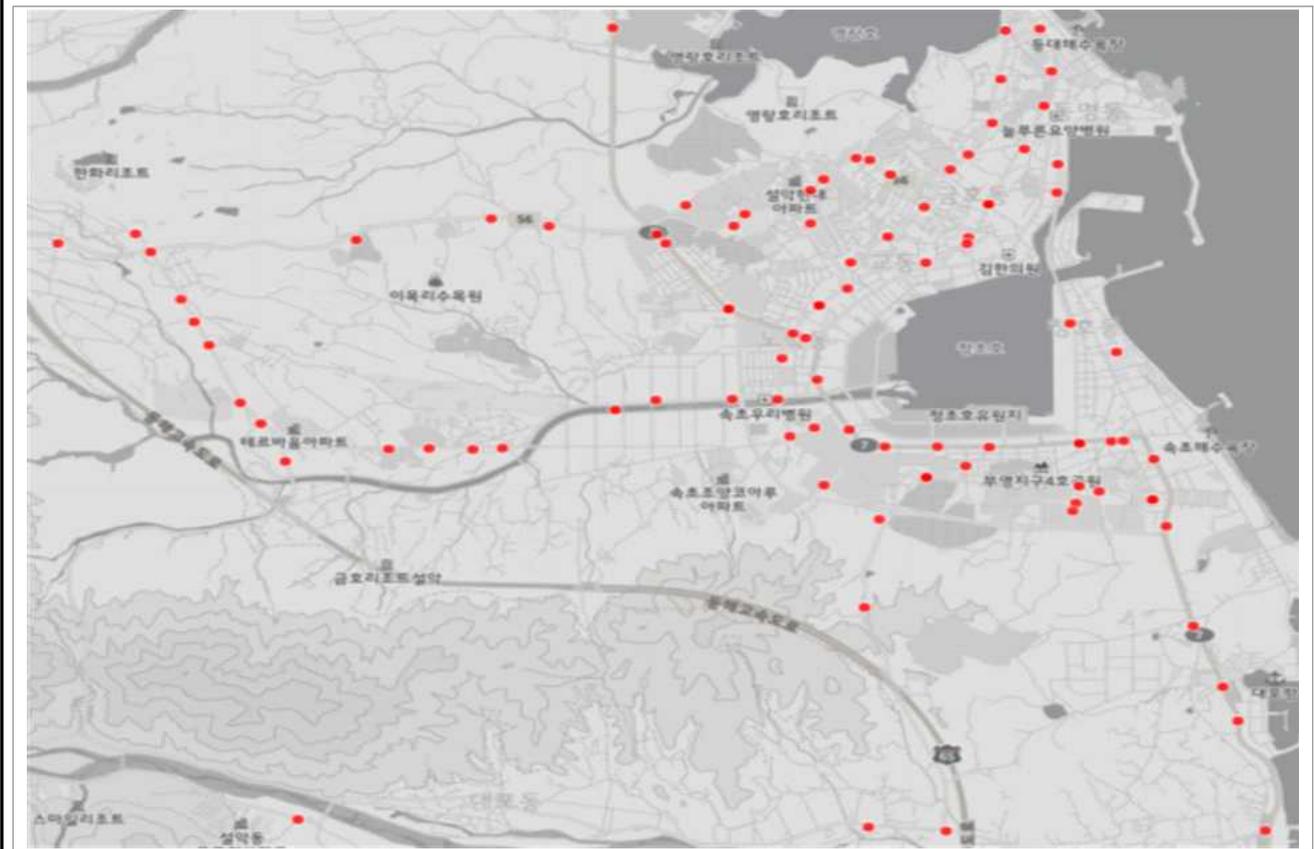
- 고시기간 : 2023. 7. 7. ~ 2023. 7. 27. (20일간).
- 고시방법 : 공보, 홈페이지, 게시판

별첨) 현장장비 위치도

■ 스마트교차로 및 VMS 사업 대상위치



■ 무선신호 온라인 대상위치



속초시 분뇨수집·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고시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56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3조의2, 「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0조의2에 따라 속초시 분뇨수집·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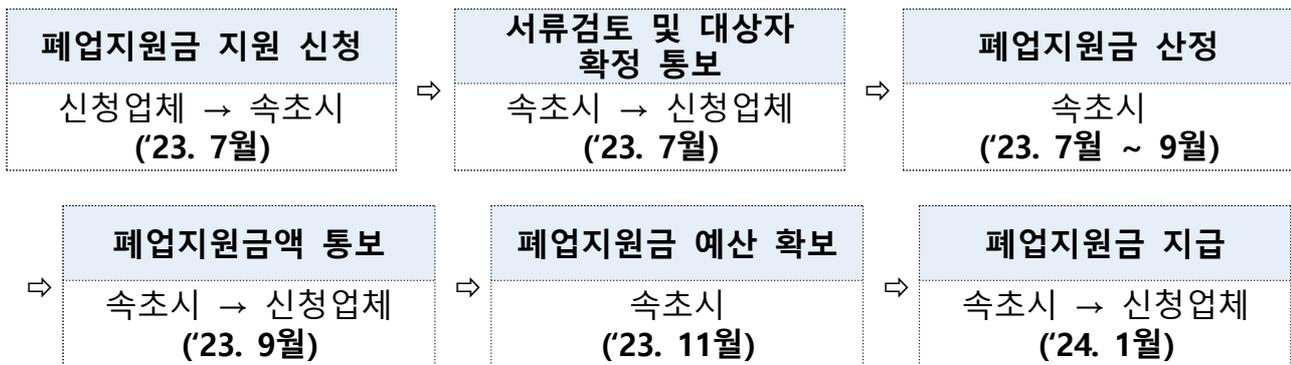
- 신청대상 : 관내 분뇨수집·운반업체 중 과거 대비 분뇨수거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악화가 심화된 사업장
- 사업량 : 2개소
- 접수기간 : 2023. 7. 17. ~ 7. 31.(15일간)
- 산정방법 : 전문기관 폐업지원금 산정금액
- 지원금액 : 영업폐지지원금 및 보유차량 예상이익금 합산
- 우선지원대상
 - 1순위 : 분뇨수거량이 적은 업체

- 2순위 : 보유차량의 수거용량이 적은 업체

-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지참하여 직접 제출 (우편접수 불가)
-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신청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지원 신청서 [붙임1] 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[붙임2] □ 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동의서 [붙임3] □ 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증 사본 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	
폐업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신고서 [붙임4] □ 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증 원본 □ 통장사본 	

2. 지원절차



3. 유의사항

-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(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)에 따라 산정하며, 산정방법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함.
- 폐업지원금 산정용역 발주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폐업지원금 산정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자에게 청구함.
- 폐업지원금 수령 및 폐업신고가 수리된 자는 분뇨수집·운반업과 관

련한 어떠한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음.
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는 체납 해소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우리 시에서 대납한 후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 친환경정책과(☎033-639-2748)로 문의 바랍니다.

【붙임3】

분뇨 수집·운반업 폐업동의서

신청인	업체명			
	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신청내용	신청대수	대 톤	허가번호 및 허가일자	
	신청차량	- 차량번호 -		

상기 본인은 속초시 분뇨수집·운반업자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고시 공고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 함에 있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기 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하는데 동의하며, 지원사업 중도 포기 시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에 소요된 금액을 납부할 것과 폐업 이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신청인 : 업체명

대표자

(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【붙임4】

분뇨수집·운반업 폐업신고서

※ 해당사항 에만 표 합니다.

신 고 인	①상호(명칭)			
	②성명(대표자)		③주민등록번호	
	④주 소	(전화 :)		
⑤사업장 소재지		(전화 :)		
⑥허가(등록)업종		⑦허가(등록)번호	제 호	
⑧ <input type="checkbox"/> 휴 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일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재개업		⑨재개업 예정일자 (휴업인 경우)	년 월 일	
⑩ 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,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 사유(구체적으로)				

「하수도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- 구비서류 1. 분뇨수집·운반업 허가증 원본 1부.
2. 통장사본 1부.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속초시 공고 제2023-692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7일

속초시장 (직인)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		
	대표자 (성 명)	이서영, 김학주	주소	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, 201동 1303호(신도림동, 신도림2차푸르지오)
소하천명		중도문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2036, 2036-1		
	면적	42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23. 6. 1.~2024. 5. 31.		
	목적 및 사유	진입로(교량) 및 관로매설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